

오리도체 등급판정 실시

글 : 축산물품질평가원

오리도체 등급판정은 소, 돼지, 계란, 닭에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등급판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범사업을 코리아더카드(전북 남원)에서 실시하여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 개선점을 보완하였고, 금년 6월에 5개의 시행업체가 추가로 지정되어 등급판정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한·중 FTA협상이 진행 중이고, 중국은 농축산대국이자 세계 최대 오리생산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변환경이 오리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되고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내 오리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방안은 좋은 품질의 오리고기 생산과 소비자 신뢰확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 오리고기의 품질향상과 위생안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또한 수입육, 냉동육, 해동육과의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오리도체 등급판정 제도는 오리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 지표를 제공하여 생산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오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지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수준과 등급판정일자를 제시하여 오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오리 등급제를 통한 사양기술 증진 및 오리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FTA가속화와 수입육 증가에 따른 국내산 오리고기의 차별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오리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보면 품질기준은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잔털·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며, 중량규격은 100g단위로 15호부터 30호까지 구분하고 있다. 한편 등급판정 신청을 위한 오리도체 최소품질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등급판정 받은 오리도체는 분할육과 추가가공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신선슬라이스육, 절단육, 훈제육 등에 “원료육등급”을 표시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오리고

※ 오리도체 최소기준

- 냉동 또는 해동된 제품을 원료육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총면적에 대해 장축의 지름이 10cm를 초과하는 분명한 변색은 없어야 한다.
- 위 내용물, 분변, 혈액, 담즙 등에 의한 이취 및 이물질 부착이 없어야 한다.

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등급판정 받은 오리 고기에 대해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하여 일반 오리 고기와 구별 되도록 하고 있다.

| 등급판정 시행업체에서 포장시 | |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포장시 |
|---|---|---|
|  |  | 원료육 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

등급판정 신청을 위한 오리도체는 당일 도축된 오리이어야 하며 냉동육, 해동육, 수입육 등은 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등급판정 받은 오리고기에 등급표시와 함께 등급판정일자가 제시되는데 해당일자는 오리 도축일자와 동일하며 오리고기가공 및 훈제 등 제조공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등급판정 받은 오리도체는 등급판정 결과가 담긴 등급판정확인서가 발행되며 해당 확인서 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 등급판정확인서 조회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등급판정 신청인과 유통업체 등이 등급판정 물량 한도 내에서 납품처별로 납품내역을 등록하고 원본확인서를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납품받은 곳은 검수시스템을 활용하여 납품받은 내역을 상세히 등록함으로써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리도체 등급판정 시행 업체〉

|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지정일 |
|-------------|-----------------------|--------------|-------------|
| 코리아더카드 | 전북 남원시 조산동 8810 | 063-625-9900 | '11. 11. 21 |
| (주)모란식품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534-39 | 043-880-5252 | '12. 6. 1. |
| 코리아팜도영농조합법인 | 전남 나주시 오량동 311 | 061-336-3226 | '12. 6. 11. |
| (주)정다운 | 전남 나주시 동수동 327-1 | 061-334-5289 | '12. 6. 11. |
| (주)하이덕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10-7 | 062-571-1412 | '12. 6. 25. |
| 신선산오리영농조합법인 | 경남 하동군 복천면 옥정리 394-2 | 055-883-5249 | '12. 6. 25. |

등급판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실시되며, 오리도체 등급판정 실시 전 반드시 도축부터 포장, 출하까지 생산단계별 품질공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오리도체 등급판정 시행업체는 6개소이며, 점진적으로 시행업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가 쉽게 등급오리를 접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코리아더카드에서 시행된 등급판정 현황을 보면 도축물량의 6.54% 정도를 등급판정 하였고 주요 판매처로는 급식(60.5%), 대형마트(39.5%)이며 최근에는 등급판정 물량 중 50%정도가 대형마트 물량이다. 현재 등급오리가 주로 판매되는 대형마트는 코스트코와 이마트로 훈제육 및 신선슬라이스육이 판매되고 있다.

오리도체 등급제는 국내산과 수입육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 오리고기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소비자가 오리고기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오리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